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85 |
|----------|-----|

2019년 6월 28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창원 · 최영주 · 노승재 의원(찬성자 9명)
- 나. 발의일자 : 2019년 5월 2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0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9년 6월 18일, 상정·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국제회의와 전시, 관광활동 등을 통칭한 컨벤션(Conven)산업에서 2000년대부터 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 Travel), 컨벤션(Convention), 전시회(Exhibition)를 통칭하는 마이스(MICE)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·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.
마이스산업은 지역 내 직·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호텔, 교통, 건설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.

- 서울은 한정된 기반시설(SETEC, Coex, aT Center)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회의 개최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양적성장 뿐 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조례 제정 개요

- 동 제정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·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- 서울시는 「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」(2019~2023)에서 “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”을 과제로 선정하여 ‘MICE도시 도약’과 ‘융복합 관광산업’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

서울의 MICE 산업은 상하이, 도쿄,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에 비해 시설규모가 10%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

「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국제회의 지원에 국한되어 MICE 종합육성에 한계가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동 조례안은 기존 「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 관련 사업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한 조례임.

나.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대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1장 총칙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),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(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),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(안 제15조부터 제19조) 및 4개의 부칙을 규정함.
-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(목적)부터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까지 구성되어 있고,

안 제1조(목적)은 동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 촉진, 도시 브랜드 제고,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, 관광·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하고 있음.

안 제2조 (정의)에서 마이스산업, 마이스전담조직을 규정하고 있음. 마이스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전에는 국제회의와 전시,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상거래, 관광활동 등을 통칭하여 컨벤션 산업이라 불렀음.

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컨벤션산업은 국제회의의 유치, 기

획, 실행 과정에서 국제회의와 연관된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관광산업이 내포하는 여러 분야의 집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할 수 있는 종합산업으로 여겨져 옴.

200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Meeting, Incentive travel, Convention, Exhibition을 포괄하여 MICE 산업으로 통칭하며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는데, 이러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MICE 개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.

동 조례의 마이스 전담조직 정의에서 “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”고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판단됨.

| 제정안 | 수정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설립·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|

안 제3조 (시장의 책무)에서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MICE 참가자는 규모가 몇 백 명에서 수 천 명 이상의 규모가 보통이며, 대규모 행사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MICE 행사 유치는 대량 관광객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로 시설확충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바 시장의 책무로 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.

-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은 안 제5조(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부터 안 제14조(국제협력)까지 구성되어 있음.

안 제5조(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은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, 국내·외 여건 및 전망,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, 전문인력의 양성, 시설 확충방안 등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음.

또한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 외에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바, 중장기, 단기 계획을 모두 수립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.

또한 전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.

안 제6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은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, 마이스행사 유치·발굴 또는 개최지원, 해외 전시회 참가, 지

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지원 등 수행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.

안 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임.

다만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| 제정안 | 수정안 |
|---|---|
|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|

안 제8조(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마이스기업의 경영지원,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.

안 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은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안 제11조(마이스 개최 지원)과 안 제12조(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)은 서울 마이스 기업간 협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마이스 얼라이언스 운영 및 지원에 근거가 되

는 조항임.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는 서울시 주도로 설립된 마이스 기업 협의체로 서울 마이스 육성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-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는 안 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부터 안 제19조(시행규칙)까지 구성되어있음.

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관련하여 안 제16조(육성위원회 구성), 안 제17조(위원장의 직무 등), 안 제18조(위원회의 운영)를 규정함.

다만 안 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에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.

| 제정안 | 수정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육성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| 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현행과 같음 |
| 1~4항(생략) | 1~4항(현행과 같음) |
| 5.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전담기구의 마이스 업무에 관한 사항 | 5.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|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·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685 |
|----------|-----------|

2019년 6월 28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마이스 전담조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제1항제2호)
-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5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설립 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”을 “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”를 “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“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| 제정안 | 수정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설립·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육성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~4항(생략)</p> <p>5. <u>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전담기구의 마이스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장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1~4항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|